

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9. 10. 20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9.10.06. 마포구청장
 - 나. 회부일자 : 2009.10.07
 - 다. 상정일자 : 제148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(2009.10.20)
- 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정 원 배 교통행정과장

가. 제안이유

「교통안전법」 개정(2006.12.28, 전부개정)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이던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 및 세부 내용을 법령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1) 제명 “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” 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 로 변경 (안 제명)

- 2) 위원회 명칭 “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” 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” 로 변경 (안 제1조)
- 3) 마포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등 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명시 (안 제2조)
- 4) 위원회 구성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며,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. (안 제3조, 제6조)
- 5)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 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음. (안 제8조)

3. 검토보고 (신승관 전문위원)

-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의 개정 및 시행으로 기존에 운영 중이던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, 개정전 조례의 불합리한 내용들을 법령 내용에 맞춰 수정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,
- 조례안 검토결과 수정할 사항을 보면 안 제8조 제1항에 “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” 로 규정하고 있는데, 같은 항에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, “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” 에서 “이상” 을 삭제하여 정기회의는 매년 1회만 개최하도록 하고, 필요하다면 수시로 임시회의를 운영하도록하는 것이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8. 기타 : 없음